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7 선고 2017나1237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7 선고 2017나1237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7 선고 2015가단512966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7. 6. 15.

판결 선고 2017. 8. 17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7. 선고 2015가단5129666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A는 8,328,483원 및 그 중 8,217,711원에 대하여 2010. 4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B, C은 각 5,552,322원 및 그 중 각 5,478,474원에 대하여 2010. 4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0. 1. 18.경 F과 사이에 보증원금 2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5. 1. 23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2010. 1. 25.경 F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 원고와 F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F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은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원고가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0. 4. 20. 이후 연 15%이다.

나. 1) 그 후 F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중앙회(이하 '농협'이라고만 한다)로부터 변제기를 2015. 1. 23.로 정하여 20,000,000원을 대출받았는데, 2010. 4. 13.경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.

2) 이에 원고는 2010. 4. 30.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에게 위 대출채무 원리금 20,027,30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852,650원을 회수하였으며, 그 후 2015. 4. 21. 위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58,470원을 지출하였다.

다. F은 2010. 8. 24.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, 망 F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의 배우자인 피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,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라. 그 후 피고들은 2010. 10. 4. 제1심 공동피고 D, E(이하 'D, E'이라고만 한다)에게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하고, 2010. 10. 5. D, E에게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가 제3호증의 3, 4,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합계 19,433,129원(= 위 대위변제금 20,027,309원 - 회수금 852,650원 + 채권보전비용 258,470원)이라 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9,433,129원 중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 및 그 중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, ① 피고 A는 8,328,483원(= 19,433,129원 × 상속지분 3/7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그 중 8,217,711원[= 19,174,659원(= 위 대위변제금 20,027,309원 - 회수금 852,650원) × 3/7]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0. 4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. 9. 9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피고 B, C은 각 5,552,322원(= 19,433,129원 × 상속지분 2/7) 및 그 중 각 5,478,474원(= 19,174,659원 × 2/7)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0. 4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. 9. 9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20%의 비율로 구하나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%로 개정되어 2015. 10. 1.부터 시행되었으므로, 위 시행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연 15%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)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법원으로부터 상속의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이를 공고하였음에도, 원고가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내에 위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등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.

2)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. 11. 3.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965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2010. 12. 23.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가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,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,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고(대법원 2006. 2. 13.자 2004스74 결정 등 참조), 한편,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"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법리 내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설사 피고들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전인 2010. 10. 5.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D, E에게 위와 같이 처분한 이상,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,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. 따라서 위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행순

판사이성은

판사김영호

별지